외국인유학생 취업관련 정보

12 취업

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 (1)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 통·번역 등)
 -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2) 대상

-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자격 소지자로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 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3) 허용범위

•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

대학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토픽, KIIP)		시작 시기	허용시간		주중 인증대학
유형					주중	주말, 방학기간	혜택
어학 연수 과정	무관	'18.10.1. 이전		6개월후	20시간		25시간
		2급	Χ	상동	10시간		10시간
			0	상동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25시간
		3급	Х	상동	10시간		10시간
			0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학사 과정	1~2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급	Χ	상동	10시간		10시간
			0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4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4급	Х	상동	10시간		10시간
			0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석/박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30시간	무제한	35시간
		4급	Χ	상동	15시간		15시간
			0	상동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영어트랙 과정: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4)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시간제취업 추천서 (붙임5),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5)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허가제외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 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6)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Tip D-2-7(일-학습연계 비자) 소지자의 체류우대 내용

- * (우대조건)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경우
- * (E-7 취업자격 등)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 비율적용 면제, 직종 폭넓게 인정, 업체요건 완화.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1회 3년씩 체류허가 등
- * (거주자격 취득)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취득 시 가점(10점) 부여
- * (영주자격 취득) 영주자격 취득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면제 또는 가점 부여
- ☞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점수제(F-2) 자격자의 영주자격 변경(F-5-10)시 소득기준 적용면제. 특정분야 능력소지자 가점 상향(10→20점)

나. 구직비자(D-10)

-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 ※ 외국인유학생가이드북에서는 점수제 구직활동(D-10-1)만 소개하고자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 발급대상

- (학력 및 구직분야)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 ※ 단, 예술흥행(E-6)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 흥행활동(E-6-2)은 적용제외,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점수요건) 별첨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 (전공 및 직종)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대상인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 허용

-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외공관장 추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 * 소정의 첨부서류 이외에 우수인재 입증서류(언론보도, 유관단체 추천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
-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과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많은 경우에는 구직사증 발급 허용

(2)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6개월

(3) 제한대상

- (법위반자)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 * 단, 입국 규제된 사실이 없고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점수제 구직(D-10-1) 자격은 추가로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 외 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 제외기준 : 국내체류 중 상기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제도남용 방지) 무분별한 사증신청에 따른 체류질서 문란 방지차원에서 아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제한
 -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 단, 국내 기업·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4)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학력증명서*
 -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수료증명서
 -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 교환학생: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공관 내부추천 문서
 -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E1~E7자격자로 취업활동을 하다가 중도 퇴직한 경우에 퇴직 당시 고용주의 동의 필요
- 체제비 입증 서류(유학 사증 준용)

(5) 신청요령

•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사무소 등에 신청

다. 취업정보

(1) 외국인유학생 취업정보 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www.contactkorea.go.kr)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링크된 사이트를 통하여 유학생들은 구인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매년 KOTRA와 함께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사이언스카드)란?

외국인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사증취득과 국내체류 관련(자격·활동·기간 등) 허가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과학기술인력의 국내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급하는 추천서

(3) 고용추천서(골드카드)란?

해외우수기술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통해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지원하여 사증 및 체류 상의 우대를 부여하는 제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contactkorea.kotra.or.kr)

Last modified: 2021-06-03